

## 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- 238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(설립인가) 및 동법 시행령 제8조(설립인가)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3. 10. 21.

중소기업청장

가. 인가번호 : 제311호

나. 조 합 명 : 한국합성목재공업협동조합

다. 소 재 지 :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 3길, 701호(불당동, 한나프라자)

라. 대 표 자 : 한 문 수

마. 인 가 일 : 2013. 10. 17.

바. 업무구역 : 전국

사. 설립업종 :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(한국표준산업분류 16212)